

④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구분 (법령)	'16년도	'17년도
사업명칭 (시행령)	- 고용촉진지원금	- <u>고용촉진장려금</u>
지원대상 (시행령, 고시)	- 여성가장, 중증장애인, 도서지역 거주자인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 - 취업성공패키지 등 15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인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	- 여성가장, 중증장애인, 도서지역 거주자 인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 - <u>취업성공패키지 등 12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인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</u> ※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 지원 제외되고, 사업종료·통합 등으로 운영되지 않는 프로그램 정비 - 취업지원프로그램을 '이수한 사람'의 요건 강화 ※ 취업지원프로그램별 세부 인정요건 참조
지원요건 (시행령)	-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	- <u>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</u>
감원방지 (시행령)	-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금지	- <u>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(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) 고용조정으로 근로자(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 제외)를 이직금지</u>
지원제외 사업주 (시행령)	-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-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-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. 다만,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고용하는 경우 제외 -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관련 사업주	-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-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- <u>해당 근로자의 이직(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. 다만,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</u> - <u>해당 근로자의 이직(해당 사업주가</u>

구분 (법령)	'16년도	'17년도
		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- (신설) 근로기준법 제43조2의 규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지원제외 근로자 (시행규칙)	- 최저임금 미만 -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	- 최저임금 110% 미만 -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
장려금 지급대상 고용기간 및 지원기간 (시행령 및 고시)	- 3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하며,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급 · 3개월~6개월 미만 : 3개월분 · 6개월~9개월 미만 : 6개월분 · 9개월~12개월 미만 : 9개월분 · 12개월 이상 : 12개월분. 단, 장애인·여성가장 등 2년간 지급	- 6개월 이상 고용 시, 6개월 단위로 1년간 지급. · 6개월~12개월 미만 : 6개월분 · 12개월 이상 : 12개월분. 단 기존 2년 지원하던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 외에 <u>취성패Ⅱ유형 청년 중 '청년내일채움공제' 지원 대상으로 고용된 사람</u>을 추가
지원 인원 한도 (시행령)	-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	-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에서 <u>지원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의 합을 제외한 인원 한도</u>
지원 금액 한도 (시행령)	-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75	-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
지급금액 (고시)	- 연간 600~900만원	- 1년간 우선지원 720만원, 대규모 360만원 - <u>취성패Ⅱ유형 청년을 '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'대상으로 고용시, 2년간 600만원</u>